

#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신청 안내

## □ 신청대상

○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소득(근로·사업) 감소 등으로 위기사유 발생 가구 중 소득·재산 기준 적합 가구

### 1) 위기사유

- ▶ 최근('20년 7월 ~ 신청월) 근로·사업소득이 비교기간<sup>(1)</sup>의 근로·사업소득 보다 **감소한 가구**  
 (1) 비교기간: '19년 월 또는 평균소득 / '19년 7~9월 월 또는 평균소득 / '20년 1~6월 월 또는 평균소득 중 택 1
- ▶ '20년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

### 2) 소득기준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
(단위: 만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 75%이하	131.8	224.4	290.3	356.2	422.1	488

### 3) 재산기준: 3억 5천만원 이하

- ◆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(긴급고용안정지원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(사업주), 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, 청년특별취업지원 등) 지원대상자 제외
- ※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은 근로자는 중복 지원 가능

## □ 지원금액

구분	1인	2인	3인	4인 이상
지원금액	40만원	60만원	80만원	100만원

□ 신청기한: **2020. 11. 20.(금) 18:00까지**

□ 신청장소: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□ 제출서류(가구 소득 감소 증빙서류)

대상자	제출서류(택1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소득자(상시,일용)</li> <li>▶ 특수형태 근로종사자</li> <li>▶ 프리랜서 등</li> </ul>	1.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▶ 사업장, 국세청 발행 2. (별도서식)고용·임금·무급휴직·소득감소확인서(사업장 작성) + 근로계약체결서, 급여지급명세서,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(택1)
사업자 (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)	1. 소득금액증명원 2.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(세금)계산서 3.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▶ 사업장, 국세청 발행 4. (별도서식)소득(매출)감소신고서 + 휴·폐업사실증명서, 매출전표,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, 거래내역 통장사본
미등록 사업자 (영세 노점상 등)	(별도서식)소득(매출)감소신고서 +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
구직(실업)급여 수급종료자 ('20.2.1. 이후 실직자)	-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취업 희망카드 -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▶ 고용센터 발행

※ 영세장업업자, 일용근로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소득감소신고서로 신청 가능

문	사천시청	831-2601	사천읍	831-5015	정동면	831-5061	사남면	831-5086	용현면	831-5115
의	축동면	831-5146	곤양면	831-5176	곤명면	831-5206	서포면	831-5236	동서동	831-5254
처	선구동	831-5284	동서금동	831-5313	벌용동	831-5355	향촌동	831-5381	남양동	831-5413